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90
----------	-------

발의연월일 : 2026. 9. 28.

발 의 자 : 김한규 · 문대림 · 이성운
김성범 · 김원이 · 맹성규
임미애 · 임호선 · 이언주
박정현 · 김문수 · 강준현
박홍배 · 이용우 · 고민정
이주희 · 박주민 · 양부남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약정이나 불합리한 위험 이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신기술사업자)이 부담해야 할 의무나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창업자,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에게 연대보증의 형태로 부담하게 하거나, 실질적인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편법적 약정(투자원금 이상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 피투자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단순 상장(IPO)

실패 등 창업자 개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업적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창업자 개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창업자가 수백억 원대의 빚더미에 앉거나 지분을 강제 회수당해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비정상적인 투자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켜 유망한 벤처·기술 기업의 창업 의지를 꺾고 창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58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임원·주주·창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4. 투자계약에 반하여 해당 제3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을 채

결하는 경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해당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부여하는 약정
2. 제3자가 신기술사업자의 투자계약의 상환의무를 갈음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배상의무 내지 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제5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제45조의2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해당 신기술사업자의 임원·주주·창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u> <u>2.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u>

3.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
한 경우

4. 투자계약에 반하여 해당 제3
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경
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
약 위반이 있는 경우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투자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
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실질적
으로 제3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주
식매수청구권(해당 주식을 매
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을 부여하는 약
정

2. 제3자가 신기술사업자의 투
자계약의 상환의무를 갚음하

제58조(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④ ~ ⑨ (생략)	<u>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배상의무 내지 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u>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u>준하는 약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u> 제58조(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제45조의2를 위반한 경우</u> 4.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	--